

국회에서 의결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17년 10월 31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박 상 기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4968호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「형법」 제129조 내지 제132조”를 “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”로,
“「부패방지법」 제50조의 죄”를 “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의 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